PDF 요약본

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한 지 6개월째라면

근로계약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, 자연스러운 요청 메시지 만드는 법, 이미 시간이 지났다면 할 수 있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.

01 핵심 요약

1.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**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**가 있는 문서로, 구두 약속만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에요.
2. 계약서가 없으면 근무조건 다툼이 생겼을 때 **입증이 훨씬 어려워져요.**
3. 이제라도 요청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며, **자연스럽게 말을 꺼낼 방법**이 있어요.

02 계약서가 있을 때와 없을 때

구분	계약서가 있는 경우	계약서가 없는 경우
급여·근로시간 분쟁	계약서 내용으로 명확히 확인 가능	말이 달랐다는 다툼이 생기기 쉬움
퇴사·해고 시	계약 조건 근거로 대응 가능	근무조건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움
4대보험·수당 계산	계약서 기준으로 명확히 산정	실제 근무 내역을 따로 입증해야 함
회사의 법적 의무	이행된 상태	미이행 상태(회사 측 위반 소지)

03 근로계약서 요청 메시지 만들기

웹페이지의 [근로계약서 요청 메시지 만들기] 영역에서 대상(대표님·사장님 / 인사팀·담당자)과 근무 형태(정규직 / 계약직 / 아르바이트·단기근무)를 고르면, 아래 예시처럼 바로 보낼 수 있는 문장이 만들어져요.

예시 · 인사팀 + 정규직

안녕하세요, 다름이 아니라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아직 받지 못해서 확인차 연락드립니다. 급여나 근무 조건을 서로 명확히 해두면 좋을 것 같아, 근로계약서를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

04 6개월 지났어도, 지금 할 수 있는 것

1. 지금 요청해도 늦지 않았어요

지금이라도 요청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.

2. 근무 내역부터 모아두세요

출퇴근 기록,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을 따로 남겨두세요.

3. 계속 미뤄지면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

고용노동부 상담센터(1350)에 문의할 수 있어요.

05 자주 묻는 질문

Q1. 이제 와서 계약서 달라고 하면 회사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?

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원래 갖춰야 할 서류라,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. 급여나 근무 조건을 서로 명확히 해두면 좋겠다는 취지로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보세요.

Q2. 구두로 계약 내용을 확인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?

구두로 확인했더라도 회사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할 의무가 있어요. 나중에 말이 달랐다는 다툼이 생기면 구두 확인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요.

Q3. 계약서를 아예 안 써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요청했다는 사실 자체를 문자나 메시지로 남겨두시고, 그래도 계속 미뤄진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1350)에 문의해볼 수 있어요.

Q4.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?

네,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의무예요.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해요.

06 추천 서식

[2026년] 표준 근로계약서

비즈폼에서 검증한 서식이에요.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들을 빠짐없이 담고 있어서, 요청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때 기준으로 삼기 좋아요. 비즈폼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.